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4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전봉민·양금희·황보승희

박대수 · 정동만 · 이종성

조수진 · 김예지 · 윤재옥

서정숙 • 이주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 주체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 타나고 있음.

이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2조).

법률 제 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와 고 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령"을 "공동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u>광역시장</u> ·도지	② <u>광</u> 역시장·특별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u> 자치시장</u>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	
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	
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
동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	동 실태조사) ① <u>여성가족부장</u>
<u>관</u> 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	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	
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	
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②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u>여성가족부령</u> 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

제12조(경력단절 예방) <u>여성가족</u>	제12조(경력단절 예방) <u>여성가족</u>
<u>부장관</u> 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u>여성가족부령</u> 으로 정하는 기관	<u>공동부렁</u>
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	
기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	
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u>.</u>